



: 2016-08-1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가합548944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16. 6. 3.
판 결 선 고 2016. 7.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229,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2. 2. 18. 주식회사 C에 입사한 후로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피고(이전 명칭 G 주식회사, 이하 피고와 G 주식회사를 통틀어 '피고'라 하고, 원고가 근무하였던 위 회사를 모두 통틀어 '피고들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의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규정

피고의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규정은 [별지 1] 피고의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규정 기재 규정(이하 '이 사건 피고의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과 같다.

다. 원고의 직무발명

원고는 피고들 회사에 재직하면서 [별지 2] 직무발명 목록 기재 직무발명(이하 이를 '이 사건 직무발명'이라 하며, 개별 발명은 순번을 붙여 칭한다)을 완성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계하였다.

라. 피고가 지급받은 기술료

피고가 다른 회사 또는 업체에게 이 사건 제10, 13 직무발명(이하 이를 '이 사건 HPC, HyPC 공법'이라 한다) 또는 이 사건 제16, 35 직무발명(이하 이를 '이 사건 PSS 공법'이라 한다)의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고 지급받은 기술료는 [별지 3] 기술료 내역 기재 내역(이하 '이 사건 기술료 내역'이라 한다)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안동시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출원 및 등록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부분

원고가 피고들 회사에 재직하면서 이 사건 직무발명을 완성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의 직무발명보상
에 관한 규정 제16, 17조에 따른 출원 및 등록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구체적인
계산 내역과 근거는 [별지 4] 출원 및 등록보상금 계산 내역 기재 계산 내역 및 근거
(이 중 제1항 계산 내역 표를 '이 사건 출원 및 등록보상금 계산 내역'이라 한다)와 같
다.

나. 불인정 부분

1) 원고는 이 사건 직무발명의 등급이 모두 1등급이라 주장하나, 이 사건 직무발
명의 등급이 이 사건 출원 및 등록보상금 계산 내역 기재 등급보다 높다는 사실을 인
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직무발명 중 일부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 전부가
실제 발명자가 아니고 그 중 형식적으로 기재된 사람이 있어 이 사건 출원 및 등록보
상금 계산 내역 표상 원고 주장 발명자 수가 실제 발명자 수라 주장하나, 갑 제11, 12,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출원 및 등록보상금 합계 7,096,000원(= 출원보상금



1,050,000원 + 등록보상금 6,04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HPC, HyPC 공법, 이 사건 PSS 공법에 대한 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상금 청구권의 성립 여부

1) 원고가 피고들 회사에 재직하면서 이 사건 직무발명의 일부인 이 사건 HPC, HyPC 공법과 이 사건 PSS 공법을 완성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각 공법의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① 이 사건 HPC, HyPC 공법은 기존 특허인 SPC 공법 혹은 PSC e-Beam 공법을 일부 보완하거나 변형한 정도에 불과하고, ② 이 사건 PSS 공법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특허(발명의 명칭 / 등록번호 / 등록일자: I / J / K, 이하 'H 특허'라 한다)를 침해한 것으로서 피고는 H와의 분쟁을 회피하고자 보완특허(발명의 명칭 / 등록번호 / 등록일자: L / M / N, 이하 '피고의 보완특허'라 한다)를 발명하였는바, 이 사건 HPC, HyPC 공법과 이 사건 PSS 공법은 각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는 발명으로 등록무효 사유가 있고, 피고가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HPC, HyPC 공법에 관하여는, 위 공법이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는 발명으로서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한편 이 사건 PSS 공법에 관하여는,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가 2012. 7. 31. 피고에게 PSS 공법이 H 특허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중지를 요청한 사실, 피고가 그 이후인 O 피고의 보완특허를 출원하였고 N. 피고의 보완특허가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 이 사건 PSS 공법이 무효가 되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



으며, ③ 발명진흥법 제15조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성립 요건으로 i) 직무발명일 것, ii)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직무발명에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어 특허권 등이 유효하게 존속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피고의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규정 제20조 본문도 '발명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⑤ 기초사실에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다른 회사 또는 업체에게 이 사건 HPC, HyPC 공법과 이 사건 PSS 공법의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고 상당한 액수의 기술료를 지급받았는바, 이를 반환하였다거나 반환하여야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보상금 산정 기준

1) 원고는 이 사건 HPC, HyPC 공법과 이 사건 PSS 공법의 보상금 산정 기준으로 ① 직무발명에 의해 피고가 얻을 이익의 액(피고의 이익액), ② 발명에 대한 사용자 및 종업원의 공헌도(공헌도), ③ 공동발명자가 있을 경우 그 중 원고 개인의 기여도(원고 기여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위 요소 중 ① 피고의 이익액은 이 사건 피고의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2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실제 유상으로 양도 또는 실시 허여하여 얻은 수입 금액, 즉 피고가 이제까지 얻은 이익의 액만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발명진흥법 제15조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따라 수령한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이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만 그렇게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얻을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6. 7. 1. 이 사건 피고의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2011. 1. 1.과 2011. 9. 1. 각 개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위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함에 있어 종업원들과 협의 또는 종업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사실 및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고의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규정 중 처분보상에 관한 부분은 발명진흥법 제15조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피고의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규정이 정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HPC, HyPC 공법과 이 사건 PSS 공법에 대한 보상금은 ① 직무발명에 의해 피고가 얻을 이익의 액(피고의 이익액), ② 발명에 대한 원고 등 종업원의 공헌도(공헌도), ③ 공동발명자들에 대한 원고 개인의 기여도(원고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 구체적인 산정

1) 피고의 이익액

가)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계산할 때는 종업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사용자에게 승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장래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해 얻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이익을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하지만, 권리 승계시 장래의 이익을 예상하여 보상금을 미리 산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변론종결일까지의 사용자의 실적 등 권리 승계 후 보상금 청구시까지 발생한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HPC, HyPC 공법과 이 사건 PSS 공법은 각 두 개의 특허발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 두 개 특허발명이 합쳐져야만 공법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만으로도 실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각 공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은, ① 피고가 각 공법의 통상실시권을 처음으로 실시할 수 있었던 날, 즉 각 공법을 이루는 각 두 개 특허발명 중 먼저 등록된 특허발명의 등록일부터, ② 피고가 각 공법의 통상실시권을 마지막으로 실시할 수 있는 날, 즉 먼저 출원된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라 할 것인바, 구체적인 날짜는 아래 표와 같다.

공법	피고가 통상실시권을 처음으로 실시할 수 있었던 날(두 개 특허발명 중 먼저 등록된 특허발명의 등록일)	피고가 통상실시권을 마지막으로 실시할 수 있는 날(두 개 특허발명 중 먼저 출원된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만료일)
HPC, HyPC 공법	P (이 사건 제13 특허발명의 등록일)	2031. 7. 22. (이 사건 제13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만료일)
PSS 공법	Q (이 사건 제16 특허발명의 등록일)	2032. 5. 14. (이 사건 제35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만료일)

다) 피고가 이 사건 HPC, HyPC 공법과 이 사건 PSS 공법으로 위 표에서 본 기간 동안 얻을 이익을 현재 시점에서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고가 위 표에서 본 기간의 시작일(P 또는 Q)부터 각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6. 3.까지 4년 179일(이 사건 HPC, HyPC 공법) 또는 3년 307일(이 사건 PSS 공법) 동안 얻은 이익을 연 평균으로 환산한 액수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위 표에서 본 기간의 만료일(2031. 7. 22. 또는 2032. 5. 14.)까지의 이익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라) 원고는 현재 발주 혹은 계약 체결 예정인 공사도 피고가 얻을 이익을 산정하는 데 있어 기초 자료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가 이제까지 얻은 이익을 기초로 하여 피고가 얻을 이익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계산하므로,



피고가 아직 얻지 못한 이익, 즉 현재 발주 혹은 계약 체결 예정인 공사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가 R사업과 관련하여 S로부터 기술료 44,688,000원을 지급 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2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원고는 피고가 T공사와 관련하여 U로부터 기술료 7,414,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로는 위 공사에 사용된 기술이 무엇인지, 기술료율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역시 피고가 얻은 이익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마)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공법	이제까지 얻은 이익	① 연 평균으로 환산	② 호프만 계수	현가(① × ②)
HPC	92,925,640원	20,700,416원	11.0548	228,838,959원
HyPC	327,789,500원	73,019,450원	11.0548	807,215,416원
PSS	862,755,000원	224,746,142원	11.5058	2,585,884,161원
비고	① 연 평균으로 환산 ㉠ 이 사건 HPC, HyPC 공법: 이제까지 얻은 이익 ÷ {4년 + (179일 / 366일)}, 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음 ㉡ 이 사건 PSS 공법: 이제까지 얻은 이익 ÷ {3년 + (307일 / 366일)} ② 호프만수치 ㉠ 이 사건 HPC, HyPC 공법: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6. 4.부터 2031. 7. 22.까지 15년 49일에 대한 호프만 계수 11.0548[= 10.9808 + (0.5555 ÷ 365일 × 49일)] ㉡ 이 사건 PSS 공법: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6. 4.부터 2032. 5. 14.까지 15년 345일에 대한 호프만 계수 11.5058[= 10.9808 + (0.5555 ÷ 366일 × 346일)]			

2) 공헌도

이 사건 직무발명들에 대해 피고들 회사와 발명자인 원고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공헌하였는지를 살피건대, 기초사실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이 사건 HPC, HyPC 공법과 이 사건 PSS 공법은 원고 외에도 공동발명자로 이 사건 HPC, HyPC 공법은 V, 이 사건 PSS 공법은 W, X, V이 있는데, 위 발명자들은 모두 피고들 회사의 직원이었고, 기존에 있던 다른 특허들을 어느 정도 참조하여 이 사건 HPC, HyPC 공법과 이 사건 PSS 공법을 개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HPC, HyPC 공법과 이 사건 PSS 공법을 포함한 이 사건 직무발명의 연구 및 개발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그에 피고들 회사의 지원이 없었으면 발명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직무발명들에 대한 발명자들의 공헌도는 20%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 기여도

이 사건 출원 및 등록보상금 계산 내역의 원고 기여도란 기재에 의한 원고 기여도를 산술 평균한다.

4) 산정 결과

최종적인 산정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공법	피고가 얻을 이익	공헌도	원고 기여도	보상금
HPC	228,838,959원	20%	80%	36,614,233원
HyPC	807,215,416원	20%	80%	129,154,467원
PSS	2,585,884,161원	20%	22.5%	116,364,787원
계				282,133,487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HPC, HyPC 공법, 이 사건 PSS 공법에 대한 보상금 합계 282,133,487원(= 36,614,233원 + 129,154,467원 + 116,364,7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89,229,487원(= 출원 및 등록보상금 7,096,000원 + 이 사건 HPC, HyPC 공법, 이 사건 PSS 공법에 대한 보상금 282,133,48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9. 3.부터 피고가 이 부분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태수

 판사 김병만

 판사 임현준



[별지 1]

피고의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규정

제3조(권리의 회사승계)

- ① 회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직무발명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승계한다. 다만 피고가 그 권리를 승계할 필요 또는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 또는 피고가 제7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피고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제15조(보상구분)

제4조의 보상금은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 및 처분보상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제16조(출원보상)

피고가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여 출원을 하였을 때는 다음의 출원보상금을 지급한다.

1. 특허 : 10만 원

제17조(등록보상)

제8조에 의하여 출원한 발명이 등록되었을 때는 별표 1의 보상기준에 의해 등록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8조의 2(처분보상)



- ① 회사가 제8조에 따라 출원하여 회사 소유로 등록된 특허권 등을 유상으로 양도 또는 실시 허여하는 경우, 회사는 그 특허권 등의 내용 및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처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회사가 회사 소유로 등록된 특허권 등을 유상으로 양도 또는 실시 허여한 경우, 특허관리부서(팀)장은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회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처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별표 3의 처분보상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당해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회사가 얻을 이익액, 발명자 공헌도(사용자의 공헌도 차감) 및 당해 발명자의 기여도(다수의 발명자가 관련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처분보상금을 지급한다.

제20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별표 1>

보상기준

1. 등록보상금

등급	평가점수	특허
1등급	80~100	200만 원
2등급	70~79	160만 원
3등급	60~69	120만 원
4등급	50~59	80만 원
5등급	50미만	50만 원

2. 평가기준표

평가요소	평가기준
------	------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1. 기술성	20	15	10	5
2. 실시가능성	20	15	10	5
3. 독창성	20	15	10	5
4. 경제적가치	20	15	10	5
5. 독점성	10	8	6	3
6. 기술의 수명	10	8	6	3

<별표 2>

실시보상 가이드라인

- 3)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발명자들의 공헌도: 해당 직무발명에 관하여 회사와 발명자들이 각각 공헌한 바를 조사하여 발명자(들)의 공헌도를 결정한다. 통상의 경우에는 10 내지 30%의 범위에서 발명자(들)의 공헌도가 결정되며, 회사가 해당 직무발명을 위하여 지속적인 인적, 물적 투자를 하였는지 여부, 연구과제의 기획 및 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회사의 기획, 지시 또는 투자에 의하여 얻어진 결과물이거나 종래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기술, 노하우, 특허 등을 토대로 발명된 경우에는 회사의 공헌도를 높게 인정할 수 있다.
- 4) (발명자들 중에서) 해당 발명자의 기여율: 직무발명이 여러 발명자들의 공동 발명인 경우에는 해당 발명자의 기여율을 결정한다. 원칙적으로 발명 신고시 기재한 각 발명자의 기여율에 의하되, 발명자 역할의 중요도, 경력, 개발에 참여한 정도, 참여기간, 담당업무, 직책, 노력의 정도, 해당 발명자가 내놓았던 제안의 중요성 및 참여한 연구진의 구성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



<별표 3>

처분보상 가이드라인

1. 처분보상 산정 방식: 아래와 같은 산정 방식을 참고로 하되, 각 사안 별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다.

[실시 보상금] = [양도금액 또는 실시료 수입] ×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발명자들의 공헌도] × [(발명자들 중에서) 해당 발명자의 기여율]

2. 각 요소별 판단 방법

- 1) 양도금액 또는 실시료 수입: 해당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실시허락(라이선스)를 하여 받는 금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여러 건의 기술, 노하우, 특허 등과 같이 일괄 양도 또는 실시허락(라이선스)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발명의 기여 비중을 산정하여 곱한 금액을 양도금액 또는 실시료 수입으로 본다.
- 2)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발명자들의 공헌도: 실시보상 가이드라인 참고
- 3) (발명자들 중에서) 해당 발명자의 기여율: 실시보상 가이드라인 참고



: 2016-08-19

[별지 2]

직무발명 목록

순번	발명의 명칭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발명자 수	증거
1	Y	Z	AA	-	-	3명	갑40-1
2	AB	AC	AD	AE	AF	4명	갑40-4
3	AG	AH	AI	AJ	AK	4명	갑40-5
4	AL	AH	AM	AJ	AN	4명	갑40-6
5	AO	AP	AQ	AR	AS	4명	갑40-7
6	AT	AU	AV	AW	AX	4명	갑40-8
7	AY	AU	AZ	BA	BB	4명	갑40-9
8	BC	AU	BD	BE	BF	4명	갑2 1p
9	BG	BH	BI	BJ	BK	4명	갑2 12p
10	BL	BM	BN	BO	BP	2명	갑2 97p
11	BQ	BR	BS	BT	BU	4명	갑2 22p
12	BV	BW	BX	-	-	3명	갑2 144p
13	BL	BY	BZ	CA	CB	2명	갑2 89p
14	CC	CD	CE	-	-	4명	갑2 182p
15	CF	CD	CG	CH	CI	4명	갑2 172p 갑40-13
16	CJ	CD	CK	CL	CM	4명	갑2 81p



: 2016-08-19

17	CN	CD	CO	CP	CQ	4명	갑2 162p 갑40-14
18	CR	CD	CS	CH	CT	4명	갑2 38p 갑40-15
19	CU	CD	CV	CW	CX	4명	갑2 30p
20	CY	CZ	DA	CP	DB	4명	갑2 151p 갑40-16
21	DC	DD	DE	CL	DF	3명	갑2 70p
22	DG	DD	DH	DI	DJ	3명	갑2 59p
23	DK	DD	DL	DI	DM	3명	갑2 50p
24	DK	DD	DN	-	-	3명	갑44
25	DO	DP	DQ	CP	DR	3명	갑2 127p 갑40-17
26	DS	DP	DT	DU	DV	3명	갑2 135p 갑40-18
27	DW	DX	DY	CP	DZ	4명	갑2 191p 갑40-19
28	EA	DX	EB	EC	ED	4명	갑2 105p
29	BL	DX	EE	CP	EF	4명	갑2 202p 갑40-20
30	BL	DX	EG	EH	EI	4명	갑2 116p 갑40-21
31	DW	DX	EJ	CP	EK	4명	갑2 220p 갑40-22
32	EL	DX	EM	-	-	4명	갑2 211p
33	DK	EN	EO	-	-	3명	갑2 231p



: 2016-08-19

34	EP	EQ	ER	ES	ET	4명	갑40-10
35	EU	EV	EW	EX	EY	4명	갑40-11
36	EZ	EV	FA	EX	FB	4명	갑40-12
37	FC	FD	FE	-	-	4명	갑40-3

* 발명자수는 원고를 포함한 숫자임.



[별지 3]

기술료 내역

1. HPC 공법

공사명	교량명	발주처	계약일	공사금액	기술료율	기술료	실시업체	도급사
FF	FG외4	영양군	12.11.	89,375,000	8%	7,150,000	FH	
FI	FJ	상주시	13.3.	162,937,500	8%	13,035,000	FH	FK
FL	FM	고령군	13.4.	140,800,000	8%	11,264,000	FH	FN
FO	FP	포항시	13.9.	118,525,000	8%	9,482,000	FH	FQ
FR	FS	의성군	14.4.	160,000,000	8%	12,800,000	FH	조달청
FT	FU외1	고령군	14.7.	74,000,000	5%	3,700,000	FH	조달청
FV	FW	김천시	14.11	364,000,000	5%	18,200,000	FH	FX
FY	FZ	임실군	15.4.	216,183,000	8%	17,294,640	GA	GB
합계						92,925,640		

2. HyPC 공법

공사명	교량명	발주처	계약일	공사금액	기술료율	기술료	실시업체	도급사
GC	GD	군위군	13.3.	390,000,000	15%	58,498,000	FH	조달청
GE	GF	경북개발공사	13.10.	423,500,000	8%	33,880,000	FH	GG



: 2016-08-19

GH	GI	포항시	15.2.	718,410,000	15%	107,761,500	FH	GJ
GK	GL	국토교통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15. 11.	594,000,000	5%	29,700,000	아시아기업(주)	조달청
GM	GN	경주시	15.12.	653,000,000	15%	97,950,000	FH	조달청
합계						327,789,500		

3. PSS 공법

공사명	교량명	발주처	계약일	공사금액	기술료율	기술료	실사업체	도급사
GO	GP	고령군	13.2.	330,000,000	15%	49,500,000	FH	조달청
GQ	GR 외2	고령군	13.4.	544,000,000	15%	81,600,000	FH	조달청
GS	GT	경주시	13.5.	1,551,000,000	15%	232,650,000	FH	GU
GV		부천시	13.8.	2,086,700,000	15%	313,005,000	FH	GW
GX	GY	군위군	14.12.	744,000,000	15%	111,600,000	FH	조달청
GZ	HA 외 1	안동시	15.7.	496,000,000	15%	74,400,000	FH	조달청
합계						862,755,000		



[별지 4]

출원 및 등록보상금 계산 내역

1. 계산 내역

순번	발명의 명칭	원고 주장 발명자수	실제 발명자수	원고 주장 등급	인정 등급	원고 기여도	출원보상비	등록보상비
1	Y	2명	3명	1	-	33%	33,000	-
2	AB	2명	4명	1	5	25%	25,000	125,000
3	AG	3명	4명	1	5	25%	25,000	125,000
4	AL	3명	4명	1	5	25%	25,000	125,000
5	AO	3명	4명	1	5	10%	10,000	50,000
6	AT	3명	4명	1	5	25%	25,000	125,000
7	AY	3명	4명	1	5	10%	10,000	50,000
8	BC	3명	4명	1	5	10%	10,000	50,000
9	BG	3명	4명	1	4	25%	25,000	200,000
10	BL	2명	2명	1	5	80%	80,000	400,000
11	BQ	3명	4명	1	1	25%	25,000	500,000
12	BV	2명	3명	-	-	33%	33,000	-
13	BL	2명	2명	1	5	80%	80,000	400,000
14	CC	3명	4명	-	-	25%	25,000	-
15	CF	3명	4명	1	3	25%	25,000	300,000
16	CJ	3명	4명	1	3	20%	20,000	240,000
17	CN	3명	4명	1	1	25%	25,000	500,000
18	CR	3명	4명	1	2	10%	10,000	160,000
19	CU	3명	4명	1	3	25%	25,000	300,000



: 2016-08-19

20	CY	3명	4명	1	3	25%	25,000	300,000
21	DC	3명	3명	1	5	33%	33,000	165,000
22	DG	3명	3명	1	3	33%	33,000	396,000
23	DK	3명	3명	1	5	33%	33,000	165,000
24	DK	3명	3명	-	-	33%	33,000	-
25	DO	3명	3명	1	5	33%	33,000	165,000
26	DS	3명	3명	1	5	33%	33,000	165,000
27	DW	3명	4명	1	5	33%	33,000	165,000
28	EA	3명	4명	1	5	25%	25,000	125,000
29	BL	3명	4명	1	5	25%	25,000	125,000
30	BL	3명	4명	1	5	25%	25,000	125,000
31	DW	3명	4명	1	5	25%	25,000	125,000
32	EL	3명	4명	-	-	25%	25,000	-
33	DK	3명	3명	-	-	33%	33,000	-
34	EP	3명	4명	1	5	25%	25,000	125,000
35	EU	3명	4명	1	5	25%	25,000	125,000
36	EZ	3명	4명	1	5	25%	25,000	125,000
37	FC	3명	4명	-	-	25%	25,000	-
합계							1,050,000	6,046,000

2. 계산 근거

가. 실제 발명자 수는 이 사건 직무발명의 발명자 수(갑 제2, 40호증 각 특허공보)에 의한다.

나. 원고 기여도는 아래 방식으로 계산한다.



- 1) 원칙적으로 실제 발명자 수를 균분한 만큼을 인정한다.
- 2) 이 사건 제10, 13 직무발명(HPC, HyPC공법):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기여도가 80%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80%로 계산한다.
- 3) 이 사건 제16 직무발명(PSS 공법 일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기여도가 20%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20%로 계산한다(다만 다른 PSS 공법인 이 사건 제35 직무발명은 원칙대로 25%로 계산한다).
- 4) 이 사건 제7, 8, 19 직무발명(TU 공법): 원고는 공동 발명자 중 한 명인 HB의 기여도가 70%임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를 공제한 30%를 나머지 발명자 3명으로 균분한 10%로 계산한다.

다. 인정 등급은 아래 방식으로 인정한다.

- 1) 직무발명평가표(갑 제39, 41호증)가 제출된 이 사건 제11, 15 내지 20, 22 직무발명은 피고의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하되, 평가표의 평가 등급에 따른 점수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 가) 직무발명 대상여부 평가: 고려하지 않음
 - 나) 발명품에 대한 기술성, 독창성: S 40점, A 32.5점, B 25점, C 17.5점, D 10점
 - 다) 발명품에 대한 실시가능성, 경제적 가치: S 40점, A 32.5점, B 25점, C 17.5점, D 10점
 - 라) 기술의 수명 및 독점성: S 20점, A 16.75점, B 12.5점, C 9.25점, D 6점
- 2) 직무발명평가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직무발명 중 피고가 4등급 이상임을 인정하는 직무발명은 그대로 인정한다.



3) 직무발명평가표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4등급 이상임을 인정하지도 않는 직무발명은 5등급으로 인정한다.

4) 이에 따른 구체적인 인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이 사건 제11 직무발명(갑 제41호증의 4): $32.5+32.5+16.75=81.75$, 1등급

나) 이 사건 제15 직무발명(갑 제41호증의 2): $25+25+12.5=62.5$ 점, 3등급

다) 이 사건 제16 직무발명(갑 제41호증의 3): $25+25+16.75=66.75$ 점, 3등급

라) 이 사건 제17 직무발명

(1) 갑 제39호증의 1: $40 + 40 + 16.75 = 96.75$ 점

(2) 갑 제39호증의 2(갑 제39호증의 3은 갑 제39호증의 2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25 + 32.5 + 12.5 = 70$ 점

(3) 갑 제39호증의 4: $25 + 32.5 + 16.75 = 74.25$ 점

(4) 갑 제39호증의 5: $40 + 40 + 20$ 점 = 100점

(5) 갑 제39호증의 6: $32.5 + 32.5 + 16.75 = 81.75$ 점

평균: 84.55 점[= $(96.75 + 70 + 74.25 + 100 + 81.75) \div 5$], 1등급

마) 이 사건 제18 직무발명(갑 제41호증의 7): $25+32.5+16.75=4.25$ 점, 2등급

바) 이 사건 제19 직무발명(갑 제41호증의 5): $25+25+12.5=62.5$ 점, 3등급

사) 이 사건 제20 직무발명(갑 제41호증의 1): $25+25+16.75=66.75$ 점, 3등급

아) 이 사건 제22 직무발명(갑 제41호증의 6): $25+25+12.5=62.5$ 점, 3등급

자) 이 사건 제9 직무발명: 피고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4등급

차) 이 사건 제2 내지 8, 10, 13, 21, 23, 25 내지 31, 34 내지 36 직무발명:
증거가 없으므로 5등급



: 2016-08-19

라. 출원보상비: 10만 원 × 원고 기여도

마. 등록보상비: 피고의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규정 별표 1 보상기준에 따른 등록보상비(1등급 200만 원, 2등급 160만 원, 3등급 120만 원, 4등급 80만 원, 5등급 50만 원) × 원고 기여도. 끝.